



# 세탁기

## 세탁기란?

오염된 의복 등을 넣고 물과 세제의 작용을 통해 빨래하는 기계로서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한다.



### ● 세탁기 구조 ●

- 몸체, 세탁조, 문, 잠금장치, 조작 레버, 손잡이, 타이머 및 계기판, 조작반, 냉·온수(스팀) 공급배관, 배수 배관, 구동모터, 풀리 등

### ● 세탁기 특징 ●

- 가정용, 업소용, 산업용 등 다양함
- 가정용은 대부분 세탁 및 탈수 겸용이나 업소용 및 산업용은 세탁기와 건조기가 별도로 가정용은 대부분 물세탁이지만 업소용 및 산업용은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기도 함



## 주요 위험요인

- ✔ 세탁기에 세탁물 투입 시 손 끼임
- ✔ 세탁물 운반 시 바닥에 넘어짐
- ✔ 중량물 인력취급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
- 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
- ✔ 세탁기 외함 누전에 의한 감전

## 안전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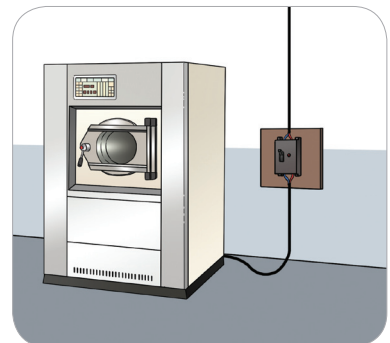
- 바닥 물기제거 및 정리정돈 실시
  - 세탁기 주변에 물기, 세탁물 등 장애물에 의한 전도위험이 없도록 주기적인 청소 및 정리정돈 철저
- 세탁조 문 열기 전 상태 확인
  - 세탁조 문을 열기 전 세탁조가 정지하고 온수가 완전히 배수되었는지 확인 철저
- 보호장구류 착용
  - 작업에 적합한 작업모, 작업복, 작업화, 장갑 등 보호장구류 착용 철저
-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
  - 세탁조에 세탁물을 집어넣거나 빼낼 때 허리를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유발되지 않도록 세탁기를 적절한 높이로 설치
  - 세탁물 운반 시 무리한 인력운반 보다는 이동대차 등 보조운반 도구를 사용하여 운반 실시
  - 작업 전 · 후 스트레칭 실시
-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
  -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세탁을 할 경우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방독마스크, 고무장갑 등 보호구 착용
  -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관련 내용 교육 및 게시 · 비치
- 감전재해 예방
  - 세탁기는 반드시 접지를 실시하고 메인 스위치는 누전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설치하며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 조작을 하지 말 것



바닥 물기 제거 및 정리정돈 실시



세탁물 운반용 이동대차 사용



누전차단기에 연결하여 사용





## 재해사례 : 이불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들고 옮기던 중 넘어져 다침

### 개요

세탁실 내에서 이불을 세탁기에 집어넣기 위해 들고 옮기던 중 바닥에 쌓여 있던 빨래더미에 걸려 넘어지며 손을 짚어 손목을 다침



### 발생원인

- 세탁실 바닥에서 세탁물 보관 및 분류작업 실시로 정리정돈 미흡
  - － 세탁물 운반용 대차 미사용
  - － 세탁물을 바닥에 방치

### 예방대책

- 세탁실 바닥 정리정돈 철저
  - － 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대 위에서 세탁물 보관 및 분류작업을 실시하고 세탁실 바닥을 정리정돈하여 적절한 통로를 확보
- 세탁물 운반용 대차 비치
  - － 부피가 큰 세탁물을 운반 시 세탁물 운반용 대차를 비치하여 활용





## 안전수칙

### 작업 전

- 세탁기의 문 잠금장치 냉·온수 배관의 누수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조치한다.
- 세탁실내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적절한 통로를 확보한다.
- 작업에 적합한 작업모, 작업복, 작업화, 장갑 등을 착용한다.
- 작업 전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몸을 푼다.
- 세탁기 전원공급 전단에 정격용량에 적합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.

### 작업 중

- 세탁기 주변에 물기, 세탁물 등 장애물에 의한 전도위험이 없도록 주기적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실시한다.
- 세탁물 운반은 가능한 이동식 대차를 이용한다.
- 각종 세탁물은 작업대 위에서 보관·분류작업하고 바닥에 방치하지 않는다.
- 세탁조 문을 열기 전 세탁조가 완전히 정지하고 배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.
- 엉킨 세탁물을 풀기위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.
-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는다.
-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세탁을 할 경우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방독마스크, 고무장갑 등 보호구 착용한다.



###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 - 제3조 (전도의 방지)
  - 제87조 (원동기,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)
  - 제89조 (운전 시작 전 조치)
  - 제316조 (꽃음접속기의 설치·사용 시 준수사항)
  - 제22조 (통로의 설치)
  - 제88조 (기계의 동력차단장치)
  - 제111조 (운전의 정지)
  - 제666조 (작업자세 등)

